

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

# 지켜주면 우리 모두 **개** 행복하

- ▶ 인사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봐 주세요. 저는 예민해요.
- ▶ 큰소리로 겁주지 말아주세요. 저도 큰소리로 말할 거예요.
- ▶ 때리지 말아주세요. 저도 아파요.
- ▶ 너무 빨리 바라보지 말아주세요. 저희에게 눈 마주침은 도전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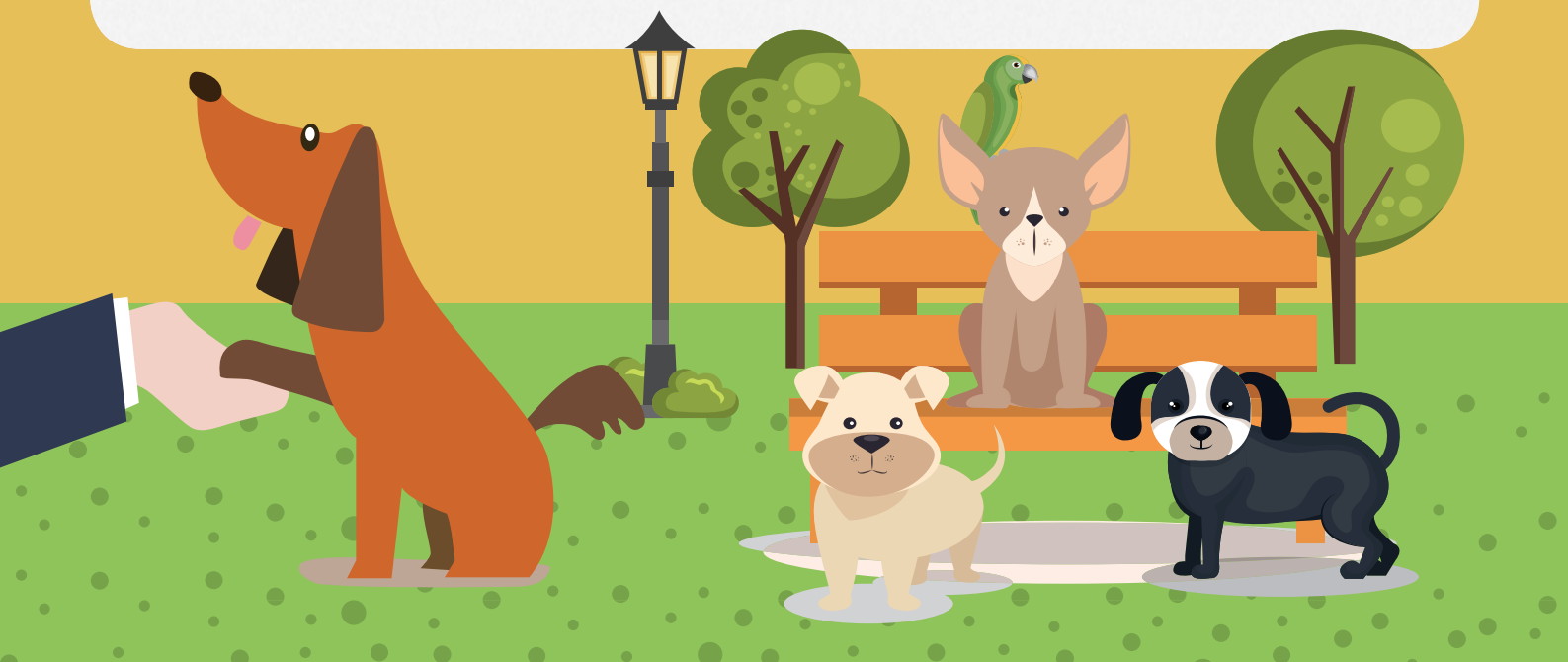
농림축산식품부

## 동물 학대 등에 해당하는 행위



-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도구·약물 등 물리적·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
- 도박·광고·오락·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(유기)
-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·전시·전달·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
-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·시합·복권·오락·유흥·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
-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
-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유실·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,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·유기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·구매하는 행위 등

\*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/>)에서 「동물보호법」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###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으려면

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묘사한 인식표를  
반려견에 부착해 주세요  
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할 수 있어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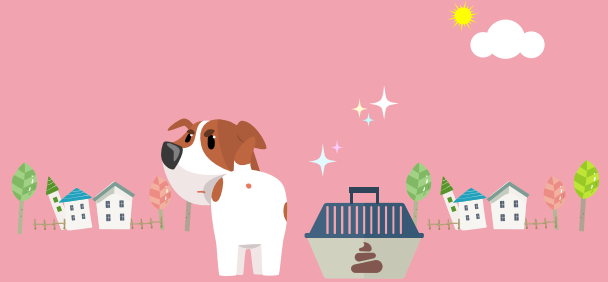
### 반려견도 주민등록을 해야합니다.

시장, 군수, 구청장, 특별자치시장 또는  
등록대행기관에 우리 아이들을 반려동물로  
등록해 주세요



### 목줄은 의무입니다.

반려견과 외출을 할 때 목줄은 꼭 필요합니다.  
맹견은 입마개도 해야 하는것, 아시죠?



### 머문자리는 아름답게

반려동물의 배설물은  
휴지와 배변봉투로 치워주세요.

### 반려견들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요

반려견들에게 적당한 교육이 필요합니다.  
규칙적으로 바깥세상을 접하도록 해주세요.



###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!

####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(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5호)

1차위반	2차위반	3차이상 위반
0만원 20만원	20만원 40만원	40만원 60만원

개정  
[18.3.22]

#### 인식표 미부착 (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호)

1차위반	2차위반	3차이상 위반
5만원	10만원	20만원

#### 안전조치 미준수(목줄, 입마개) (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)

1차위반	2차위반	3차이상 위반
5만원 20만원	7만원 30만원	10만원 50만원

개정  
[18.3.22]

#### 배설물 수거 미이행 (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)

1차위반	2차위반	3차이상 위반
5만원	7만원	10만원

# 동물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

##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

### □ 동물학대 등 행위

-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도구·약물 등 물리적·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
- 도박·광고·오락·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·전시·전달·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
-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·시합·복권·오락·유흥·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
-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
-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유실·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,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유실·유기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·구매하는 행위 등

##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

### □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

-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개, 주택·준주택 외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소유 후 30일 이내 등록
- 반려견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시·군·구청에 신고(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)

### □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

- 소유자의 성명, 전화번호,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

### □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(유기)

### □ 동물 운송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하거나 판매하는 행위

### □ 시·군·구청장의 동물보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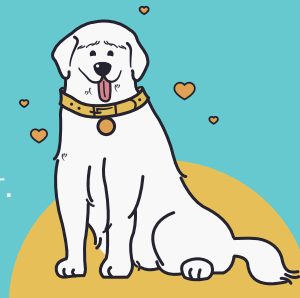
- 동물 학대중지·위해방지 조치 등

\*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/>)에서 「동물보호법」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리셨거나 입양을 원하십니까?

동물보호관리시스템([www.animal.go.kr](http://www.animal.go.kr))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시·군·구청에서는 유기동물을 구조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합니다.
-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될 수 있습니다.



안전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, 함께 만들어가요



농림축산식품부